

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6. 14.(목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① 성원보고
 - ② 국민의례
 - ③ 개회선언
 -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2013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 - (2012-33-120)

○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국가재정법 제31조(예산요구서 제출) 및 제66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)에 따라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- 스마트 생태계 조성,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, 네트워크 고도화, R&D 및 이용자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

·기금은 '12년도 디지털전환에 따른 대규모 재정소요로 감액되었던 사업,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을 추가 반영

< '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(억원) >

| 구 분 | 회 계 | '12년 예산 (A) | '13년 지출한도 (B) | '13년 예산안 (C) | '12년 대비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| C-A | % | |
| 세입 | <합 계> | 11,616 | - | 11,225 | △391 | △3.4 | |
| | ▪ 예산 | 3,357 | - | 2,281 | △1,076 | △32.1 | |
| | ▪ 방송통신발전기금 | 8,259 | - | 8,944 | 685 | 8.3 | |
| 세출 | <합 계> | 8,322 | 7,546 | 9,460 | 1,138 | 13.7 | |
| | ▪ 예산 | 소 계 | 2,945 | 2,987 | 2,987 | 42 | 1.4 |
| | | 일반회계 | 2,844 | 2,868 | 2,868 | 24 | 0.8 |
| | | 혁특회계 | 101 | 119 | 119 | 18 | 17.8 |
| | ▪ 방송통신발전기금 (R&D) | 5,377 (2,072) | 4,559 (2,134) | 6,473 (2,305) | 1,096 (233) | 20.4 (11.4) | |

②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용

(1) 2013년도 세입 예산안

□ 총 세입은 11,225억원으로 '12년도 11,616억원 대비 391억원(3.4%) 감소

- 일반회계는 2,281억원으로 '12년도 대비 1,076억원(32.1%) 감소

·주요 감소원인은 할당방식 변경(심사→대가), 대가할당에 따른 추가감면(전파법 시행령 개정안) 등으로 전파사용료 세입 감소(△1,156억원)

·다만, 전기통신사업법, 방송법 등에 의한 사업자 과징금 등은 증가

- 기금은 8,944억원으로 '12년도 대비 685억원(8.3%) 증가

·방송광고 등의 매출액 증가로 방송사 분담금 증가 추세

·'11년도 할당한 주파수 할당대가 분납금 및 실 매출액 부담금 증가

(2) 2013년도 세출 예산안

□ 총 세출은 총 9,460억원으로 '12년도 8,322억원 대비 1,138억원(13.7%) 증가

- 일반회계는 전파방송산업 활성화,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, 정보보호 강화 등 총 2,868억원 편성('12년 2,844억원 대비 0.8% 증가)

·위성전파 감시시스템 고도화(14억원), 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시설 구축(25억원),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(23억원) 등 총 7개 사업 신규 편성(94억원)

·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(27→53억원), 개인정보 유·노출 대응체계 구축(28→65억원) 등 총 15개 사업 증액(432→608억원, 176억원 증)

·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(30→27억원),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(42→37억원) 등 총 8개 사업 감액(625→582억원, 43억원 감)

·기금성격인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 지원,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 등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이관(13개 사업 267억원)

-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지방이전(서울→나주) 신축 청사 시설비,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(100→119억원, 19억원 증)

- 기금은 인터넷 신산업 기반 구축,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총 6,473억원 편성('12년 5,377억원 대비 20.4% 증가)

·인터넷 신산업 기반 구축(80억원), 스마트서비스 촉진 기반 조성(45억원), 통신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(15억원),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 지원(115억원) 등 총 21개 사업 신규 편성(955억원)

·방송콘텐츠 제작 지원(180→200억원),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 지원(43→218억원),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(35→52억원) 등 총 17개 사업 증액(778→1,287억원, 509억원 증)

·방송통신 미래대비 전략서비스 육성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·표준화 등 방송통신 R&D 투자 확대(2,072→2,305억원, 233억 증)

·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(191→20억원), '13년에 완공되는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 센터 건립(389→238억원) 등 총 12개 사업 감액(2,208→1,254억원, 954억원 감)

나.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33-121)

-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10차('12.3.6) 및 제20차 위원회('12.4.10) 보고 후,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친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내용

① 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연동규정 삭제(안 제12조제1항제1호)

- MBC에 대해 책정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의 2/3를 KBS·EBS에 적용하도록 하는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

②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경감 확대

- (경감대상 및 금액 확대) 자본잠식이 발생한 비율만큼 분담금을 경감함으로써, 경감대상을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고 경감하는 금액도 확대(안 제13조제2항)
- (분담금 경감 소급적용) 개정령안의 분담금 경감을 확대하는 규정을 2012년도 분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(안 부칙 제2조)

③ 재난방송의 범위 및 대상사업자 추가

- 재난방송 범위에 "민방위경보방송"을,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"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(IPTV)"를 추가(안 제28조제1항)
- 과태료 부과대상에 민방위경보방송 추가(안 제31조제1항 별표)

o 향후일정

- '12. 6월 :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안심사
- '12. 7월 :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

다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주)넥슨코리아(2012-33-122)

- o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(주)넥슨코리아에 대한 행정 처분안을 의결함

o 주요 내용

① 법 위반 조항

- 동 법 제25조제1항 등

② 행정처분 내용

- 과징금 : 7억 7,100만원, 과태료 : 1,500만원, 시정명령

※ 동 법 제28조제1항에 대한 처분은 차후 사법부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름

라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주)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(2012-33-123)

o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(주)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함

- 또한, 동 내용을 검찰에 문서로 통보하기로 의결함

o 주요 내용

① 법 위반 조항

- 동 법 제22조제1항, 동 법 제24조의2제1항, 동 법 제31조제1항 등

② 행정처분 내용

- 과징금 : 2억 300만원, 과태료 : 1,500만원, 시정명령 등

7] 보고사항

가.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」(고시) 제정에 관한 사항

o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고시 제정안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o 주요내용

① 총칙(안 제1조 ~제6조)

- 본 회계기준의 목적,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 규정

-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정함

-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

② 재무제표(안 제7조 ~제10조)

-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자산, 수익 및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 표시하며,

·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,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 배부기준 제시

-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결합판매의 경우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광고 매출액과 지원대상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각각 구분 표시

③ 재무상태표(안 제11조 ~ 제13조)

-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·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임의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 하지 않도록 하며, 주요 자산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

④ 손익계산서(안 제14조 ~ 제16조)

- 모든 수익 및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으며, 주요 손익계정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
- 방송광고대행사업 매출액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사로부터 광고 위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로 규정하며, 매출원가는 방송광고판매 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로 규정함

⑤ 기타 사항(안 제17조 ~ 제34조)

- (부속명세서) 방송광고매출액,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명세서는 방송사별, 매체별 및 광고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토록 함
- (영업보고서 제출 및 회계자료 관리) 본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며 관련 회계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토록 규정

○ 향후 일정

- 행정예고, 규제심사 등 : 2012년 6 ~ 7월 중순
- 위원회 심의·의결 : 2012년 7월 말
- 관보게재 및 시행 : 2012년 8월 초

㉠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6. 21(목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35)